

최신 입법 트렌드

# 인공지능(AI)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글.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 머리말

-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 Al<sup>1)</sup>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리걸테크, Al챗봇, AI헬스케어, AI에듀테크 등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하나 둘 등장하며 인공 지능이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 언론에서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연일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기존 생성형AI(GPT-3.5)는 인공지능에게 텍스트(또는 음성)의 단일 형태로 지시를 수행하게 하였으나. 최근 공개된 GPT-4o(오픈AI사)와 아스트라(구글) 등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 처리하여 멀티모달 (multi-modal)<sup>2)</sup>로 실시간 인간의 감정을 분석해 반응하는 등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sup>3)</sup>시대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대응하여 인공지능을 규범적으로 규율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럽연합(ELJ)은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규제에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제정하였다. 미국은 AI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미국인공지능진흥법 (Advancing American AI Act), 제정,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 인공지능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2019, 12, 17,)한 이후, 2024년 5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외교부가 '인공지능(Al) 서울 정상회의(5. 21. ~ 22.)'와 'AI 글로벌 포럼 (5. 22.)'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거버넌스 3대 원칙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등 AI와 관련하여 국제적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이 페이퍼에서는 향후 AI 관련 입법 및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EU와 미국, 그리고 그 밖의 국가들의 인공지능에 관한 입법 관련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및 입법 동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sup>1)</sup> 기존 데이터와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키는 인공지능을 뜻함(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sup>2)</sup>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 양식을 함께 처리하는 것(출처: 네이버(한경 경제용어사전))

<sup>3)</sup> 특정 문제만을 해결하는 좁은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과 같은 지능을 구현하는 인공지능(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 ■ 해외입법사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AI와 관련된 글로벌 표준에 자국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AI 규범 정립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AI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sup>4</sup>

## ▶ 미국 행정명령과 인공지능법

- 미국에서는 2021년 1월 1일 국가 인공지능 계획수립 및 시행을 담당할 기구(과학기술정책실 소속의 국가인공지능계획사무국)와 위원회(국가인공지능자문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2020 국가인공지능계획법(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을 제정 · 공포하였는데, 이 법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인간이 정한 일련의 목표를 위해 실제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권고 또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계 기반의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 -2022년 10월 17일에는 미 연방정부 행정기관 직원<sup>5)</sup>들의 지식과 역량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인공지능 훈련법(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을 제정·공포하였고, 2022년 12월 23일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램 및 시책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 인공지능진흥법(Advancing American AI Act)」을 제정·공포하였다.
- 한편, 인공지능 관련 법률의 제정 이전부터 미국은 AI 관련하여 행정명령들을 발령하였는데, 2019년 2월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이 선도하는 과학적 · 기술적 ·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전략 목표를 규정한 「미국의 인공지능 선도적 지위 유지(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를 위한 행정명령(제13859호)」을 발령하였고, 이후 2020년 12월에는 「연방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촉진(Promoting the Use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을 위한 행정명령(제13960호)」을 발령하여 정부기관에서 AI를 적절히 사용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있음을 언급하며 계속 사용을 권고하였고, 연방정부에서 AI를 설계, 개발, 취득하거나 사용할 시 주수해야 할 원칙<sup>©</sup>을 규정하였다.



● 그리고 2023년 10월 30일, 바이든 정부는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한 행정명령(제14110호)<sup>7)</sup>」을 발령하였는데, 이 행정명령에서는 인공지능이 엄청난 잠재력과 위험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어, 인공지능을 선의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민간, 학계와 시민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사용에서 지켜야할 행정부의 8가지 원칙과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연방기관이 참여하여야 할 100개 이상의 특정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다. 그리고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서 AI 관련 정책 입안, 적시 이행, 연방정부의 활동 조정 기능을 하게 되는 백악관AI위원회를 대통령실 내에 설립하도록 하였다.

## 【행정명령 14110호에 규정된 AI 정책 8원칙과 주요 조치사항】

원칙(Sec. 2.)	주요 조치사항(Sec. 4.~11.)
<b>안전과 보안</b> <b>원칙1</b> AI는 안전하고 안정적이어야 함	Al 기술의 안전 및 보안(Safety and Security)의 보장(Sec. 4.)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l 업계 관련 표준과 모범 사례 개발  · 이중 용도(dual-use)* Al 모델 개발 시 안전성 테스트(Al red-teaming** test) 및 그 결과 정부 보고***  * 평화 목적과 군사 목적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의미  ** Al시스템의 결함과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한 구조화된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Al 개발자와 협업하여 수행됨. Al red-teaming은 일반적으로 전담 팀이 적대적 방법을 통해 Al시스템의 유해하거나 차별적인 출력, 예상하지 못하거나 바람직하지 아니한 시스템 작동, 한계 또는 시스템의 오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 등과 같이 Al시스템의 결함과 취약점을 식별하게 됨(Sec. 3.(d))  *** 백악관은 '안전성 검증에 대한 정부 보고'를 두고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근거한 것으로 첨단 Al 기술이 출시되기 전에 개발・훈련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고, Al 훈련도 평가 범위에 두었는데, 이는 세계 각국 정부의 Al 규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볼 수 있음 <sup>®)</sup> · 중요 인프라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 평가・공개  · 화학, 생물학, 방사선 등의 생산 대응에 Al가 사용될 가능성 평가  · 생성 Al 콘텐츠 인증, 출처 추적, 라벨 지정ㆍ감지를 위한 기존 및 잠재적 표준, 도구, 방법 식별을 위한 지침 개발

July 2024 30 | 31

<sup>4)</sup> 뉴시스 - 'EU"인종 · 종교 분류 AI 범죄 프로파일링 금지"…'AI 안전'글로벌 화두' 2024.5.26.

<sup>5)</sup> 이 법률에 따른 훈련대상 인력에 행정기관에서 프로그램 관리, 품질관리 · 보증 등 각종 시스템의 계획 · 연구 · 개발, 조달 및 계약, 물류, 비융 추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하되, 국방부, 국가핵안전관리처 및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훈련 대상에서 제외함.

<sup>6) &#</sup>x27;AI를' 설계, 개발, 취득 및 사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주요원칙으로 a. 합법적이며, 미국의 가치를 존중할 것, b. 목적과 성과 중심일 것, c. 정확하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일 것, d. 안전성과 보안성 및 회복력이 있을 것, e. 이해할 수 있을 것, f. 인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입력물과 출력물 추적이 가능할 것, g.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h. 투명할 것, l. 책임을 부담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sup>7)</sup>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관련 법적 규제 장치를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평가(관련 기사)가 있으나, 이 행정명령에 기초하여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위험성 관리를 위한 안전성 테스트 결과 보고 등 규제 조치 외에 AI 혁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AI 전문 인력 유치, 교육 강화 등 진흥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음[글로벌 산업정책동향, 워싱턴 DC Weekly Brief-1월(5), (2024-GT-DC-004,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sup>8)</sup>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480호, 바이는 행정부의 첫 인공지능 행정명령과 시사점(2023, 11, 10.).

### Legislation Newsletter

# 최근 입법 트렌드

원칙2	<b>혁신과 경쟁</b> 책임있는 혁신, 경쟁, 협력으로 Al분야선도	혁신 및 경쟁(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의 촉진(Sec. 5.)· AI 교육이나 취업 목적 비자 절차 간소화· AI 관련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	
원칙3	<b>근로자 지원</b> AI의 책임있는 개발·사용을 위한 서약(근로자 지원)	<b>근로자에 대한 지원</b> (Supporting Workers) <b>(Sec. 6.)</b> · Al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직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주가 채택할 수 있는 원칙과 모범 사례 제시	
원칙4	평등과 시민권 Al정책은 평등과 시민권 증진빙향과 일치해야함	평등과 시민권(Equity and Civil Rights)의 증진(Sec. 7.)  ·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AI 사용에 대해 보고  · 자동화, 알고리즘 시스템 사용 시 적격수혜자의 프로그램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 등과 관련된 지침 발행  · AI와 그 밖의 기술 기반 고용 시스템과 관련된 고용 시 차별금지에 관한 지침 공표	
원칙5	소비자 보호 일상에서 AL사용자의 이익을 보호	소비자, 환자, 승객 및 학생에 대한 보호(Protecting Consumers, Patients, Passengers, and Students)(Sec. 8.)  · 사기, 차별, 개인정보보호 위협(금융안전성 위협 포함)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AI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해결을 위해 전권 사용  · AI가 통신 네트워크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조치를 고려하도록 장려	
원칙6	<b>개인정보보호</b> 개인정보와시민 자유는보호되어야함	사생활과 시민 자유(Americans' privacy and civil liberties)보호(Sec. 9.)  · 기관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 및 기밀 유지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준 및 절차 평가 · 개인정보보호 연구 발전	
원칙7	연방정부의 AI사용 관련 노력 AI사용에 따른 위험 관리, 규제 자원을 위한 내부역량 항상 중요	연방정부의 AI 사용의 진전(Advancing Federal Government Use of AI)(Sec. 10.)  · AI 관련 기관에 지침 발행  ·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 지정  · 연방 직원의 생성 AI 사용에 대한 지침 개발	
원칙8	글로벌 리더십 마국이사회,경제, 기술발전을선도해야 함	미국의 리더십 강화(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Abroad)(Sec. 11.)  · AI 표준을 홍보하고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참여 계획 수립  ·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 지정  · 글로벌 AI 연구 의제 개발	



#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 유럽연합은 2024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최종 확정하였는데, 이는 2021년 EU 집행위원회가 최초로 법안을 제안한 이후 3년만이다. EU 27개 회원국이 인공지능법안에 최종 합의(2024. 2. 2.)하고,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2024. 3. 13.)된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2024. 5. 21.)된 것이다. 인공지능법에 따른 첫 조치는 2024년 12월 이후<sup>9</sup>에 시행되게 되고, 법 발효 24개월 뒤인 2026년 중반부터는 대부분의 규정이 시행되게 된다.
- EU 인공지능법은 위험기반 규율로 위험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을 규율하고 있다. 먼저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등 8가지 영역에서 금지되는 인공지능 관행(Prohibited AI Practices)을 명시하고 있다. 각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기본권 등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AI시스템에 대해 출시·이용 자체를 금지하면서,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범죄 예측' 등 일부 영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EU 인공지능법상 금지되는 AI시스템】

구분	상세내용	
의사결정 왜곡	인간의 잠재의식을 이용하거나, 이를 조작 · 기만하는 기술로 의사결정 능력을 저하시켜 원치 않는 결정을 야기하는 AI시스템은 금지	
특정 집단의 취약성 악용	사람이나 특정 집단의 연령, 장애 또는 특정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행동을 중대하게 왜곡하거나 중대하게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중대하게 왜곡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AI시스템은 금지	
사회적 평점 (Social Scoring)	사회적 평점에 따른 개인/집단의 평가/분류 시 다음과 같이 불이익 처우 야기 및 인간의 존엄성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지 i) 데이터가 원래 생성되거나 수집된 맥락과 무관한 사회적 맥락에서 특정 자연인 또는 집단을 차별 또는 홀대하는 경우 ii) 그들의 사회적 행위나 그 중대성에 비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게 특정 자연인 또는 전체 집단을 차별 또는 홀대하는 경우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범죄 예측	자연인의 프로파일링 또는 그들의 성격 특성 평가만을 기반으로 자연인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자연인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AI시스템은 금지 ※ (예외) 범죄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의 개입에 대한 인적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AI시스템은 허용	

July 2024 **32 | 33** 

<sup>9)</sup> 법은 2024년 6~7월 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관보 게재 후 20일부터 발효됨(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developments).

# 최근 입법 트렌드

		인터넷 또는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스크래핑하여 얼굴인식 데이터
-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변이것 모든 CCTV 항상에서 결을 어머지를 구축규칙한 항식으로 쓰고대상이어 결을한국 데이다 베이스를 생성하거나 확장하는 AI시스템은 금지
	직장/교육기관에서의 감정 추론	교육이나 사업장에서 자연인의 감정을 추론하기 위한 AI시스템을 출시하거나, 이러한 특정 목적을 위한 서비스를 개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 ※ (예외) 의료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AI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출시하려는 경우
	생체인식 분류	인종,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을 연역하거나 추론하기 위하여 생체 정보에 기초하여 자연인을 개별적으로 분류하는 생체인식 분류시스템은 금지 ※ (예외) 법 집행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확득된 이미지 같은 생체정보 데이터의 라벨링 또는 필터링은 허용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신원확인	법 집행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단, 아래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b>예외로 허용</b> ) i) 납치, 인신매매, 성적 착취의 특정 피해자에 대한 표적 수색 및 실종자 수색 목적 ii) 자연인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임박한 위협 또는 진정으로 현존 하거나 진정으로 예측 가능한 테러 공격 위협의 방지 목적 iii) 부속세I에 따른 범죄에 대한 형사 수사, 기소 또는 형벌 집행을 목적으로 최대 4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구금 명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소재 파약 또는 식별 목적

• 또한 EU 인공지능법은 고위험 AI시스템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고위험 AI시스템은 건강/안전/기본적 권리에 중대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sup>10)</sup>으로, 시장 출시 전 영향평가, 시장 출시 후 모니터링·보고·위험관리 의무 등의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 【EU 인공지능법 부속서 III에 따른 고위험 AI시스템】

구분 상세내용		상세내용
	생체인식	EU 또는 국내법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특정인 확인이 유일한 목적인 경우 제외) - 민감하거나 보호되는 속성이나 특성을 추론하여 생체인식 분류에 사용하려는 AI시스템 - 감정인식에 사용하기 위한 AI시스템
	중요기반시설	- 디지털기반시설, 도로, 교통, 수도, 가스, 난방 및 전기 공급의 관리·운영에 있어 안전구성요소로 활용되는 AI시스템



교육 및 직업훈련	- 입학 결정이나 할당에 사용되는 AI시스템 - 학습 결과 평가에 사용되는 AI시스템 - 교육 수준 평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AI시스템 - 시험 중 금지된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감지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AI시스템
근로자 관리 및 자영업에 대한 접근	- 채용 과정에서 평가에 사용하기 위한 AI시스템 - 성과 모니터링, 평가에 사용되는 AI시스템
필수 민간 및 <del>공공</del> 서비스, 혜택접근 및 향유	-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필수 공공 지원 혜택 및 서비스에 대한 자격 평가에 사용하기 위한 AI시스템 - 신용도 평가에 사용하려는 AI시스템(금용 사기 탐지 목적 제외) - 생명 및 건강 보험과 관련된 위험 평가 및 가격 책정에 사용하기 위한 AI시스템 - 응급 대응 서비스 출동 순위 설정에 사용되는 AI시스템
법 집행	-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AI시스템 - 거짓말탐지기 또는 유사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AI시스템 - 범죄 수사, 기소 과정에서 증거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AI시스템 - 범죄 또는 재범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지침 <sup>11)</sup> 에 따른 프로파일링에만 근거하지 않고 개인이나 그룹의 성격, 특징, 과거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AI시스템 - 범죄의 탐지, 수사, 기소 과정에서 관련 지침에 따른 프로파일링을 위해 사용하려는 AI시스템
이주, 망명 및 국경 통제관리	<ul> <li>- 권한 있는 공공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AI시스템</li> <li>- 입국자의 보안 위험, 건강 위험 등을 평가하기 위한 AI시스템</li> <li>- 비자, 거주 허가 신청 심사와 관련하여 증거 신뢰성 평가를 포함한 적격성 판단에 사용하기 위한 AI시스템</li> <li>- 이주, 망명, 국경 통제관리 맥락에서 개인을 감지, 인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AI시스템 (여행 서류 확인 제외)</li> </ul>
사법 및 민주적 절차 관리	- 사법기관에서 분쟁 해결에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AI시스템 -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는 AI시스템(개인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결과물에 대한 시스템은 제외)

- 구체적으로는 고위험 시스템 출시 전 준수사항으로 위험성 관리체계 등 7가지 특정요건<sup>12)</sup>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를 7개 유형(제공자, 배포자, 공인대리인, 수입업자, 유통업자, 제품 제조업자, 공급자)으로 구체화하여 각각에게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도록 이해관계자 유형별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July 2024 **34 | 35** 

<sup>10)</sup> 법에서는 AI시스템이 (a)제품의 안전구성요소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거나 AI시스템 자체가 유럽연합 통합법률 리스트(ANNEX I)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면서, (b)유럽연합 통합법률 리스트(ANNEX I)에 따라 시장 출시 또는 서비스 개시를 위해 제3자 적합성 평가를 거쳐이하는 AI시스템 (안전 구성요소이거나 제품 자체인 경우)은 고위험 시스템으로 간주하며 부속서III(ANNEX III)에 따른 AI시스템(생체인식, 중요 기반시설, 교육 및 직업훈련, 법집행 등에 활용되는 AI시스템)도 고위험으로 간주.

<sup>11)</sup> Directives (EU) 2016/680. 이 지침 제3조(4)에서는 "Profiling"을 자연인과 관련된 특정 개인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특히 해당 자연인의 업무 수행, 경제 상황, 건강, 개인 선호도, 관심사, 신뢰성, 행동 위치 또는 움직임과 관련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성된 모든 형태의 개인 데이터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sup>12)</sup> ①위험성 관리 체계 ②데이터 및 데이터 거버넌스 ③기술문서 ④기록보관 ⑤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및 정보제공 ⑥사람의 감독 ⑦정확성, 견고성 및 사이버 보안



# 【EU 인공지능법상 이해관계자 유형, 정의 및 이에 따른 의무사항】

	[나 다 다 시 이 다 이 에 다 게 지 ㅠ 하 , 하 의 롯 이에 띄는 귀구지 하 ]				
유형	형	정의	의무사항 <sup>13)</sup>	비고	
제공 (provi		AI시스템 또는 범용 AI모델을 개발하거나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 하에 유료 또는 무료로 AI시스템 또는 범용 AI모델을 개발하여 출시하거나 AI시스템을 서비스 개시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관청 또는 기타 기구	(1) 고위험 AI시스템 준수사항 준수 여부 확인 ② 고위험 AI시스템에 연락처 표시 ③ 품질관리시스템 준수 ④ 문서 보관(기술문서, 품질관리시스템 문서, 인증기관의 변경사항 승인자료, 결정자료 등) - 금융기관 특례 ⑤ 통제 하에 있는 경우 자동으로 생성된 로그보관(6개월 이상) - 금융기관 특례 ⑥ 시장 출시/서비스에 투입되기 전 적합성평가 절차 준수 (7) EU 적합성 선언 작성 ⑥ CE 미크 부착 ⑨ 등록 의무 준수 (6) 필요한 시정조치(규정 위반시 적절한 조치) 및 정보 제공 (1) 국가 관할 기관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위험 AI시스템이 모든 준수사항에 부합함을 입증 (2)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의무 보장 (다른 법률상의 규제사항) (3) 제23조에 따른 관할 당국과의 협력 - 당국 요청 시, 준수시항 준수 입증자료, 자동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 제공 (4) 중요한 변경 시 적합성 평가실시 (5) AI리터러시		
배포 (deplo	- •	AI시스템이 개인적, 비전문가적 활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체 권한에 따라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관청 또는 기타 기구	① 시스템의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 필요 ② 인적 감독 보장(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 교육, 권한, 필요한 지원 보장) ③ 시스템의 설계 목적을 고려하여 입력 데이터의 관련성, 충분한 대표성 확인 ④ 사용 지침을 기반으로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 문제 발생시 제공자에게 통지	※기출시 시스템에 자신의 명의· 상표 부착하거나, 수정·변경해 출시한 경우 고위험 제공자로 간주	

<sup>13)</sup>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 1차회의(2024. 4. 16.) 내용 참고(https://www.youtube.com/watch?v=SePzjxUyM7o).



		<ul> <li>⑤ 사용 지침에 따른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초래가능성 인식 → 즉시 제공자 등 통지, 규제기관신고, 시스템 사용 일시 중지</li> <li>⑥ 중대한 사건 발생시, 먼저 제공자에게 즉시 통보한 다음,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 및 관련 규제기관에 신고</li> <li>⑦ 자동으로 생성된 로그 보관(최소 6개월)</li> <li>⑧ 작업장에서 사용시, 사용 전 고용주인 배포자는 근로자 대표와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 시스템 적용 고지</li> <li>⑨ 배포자가 공공기관이면 등록 의무 (미등록시 사용 금지 - 유통업자 통지)</li> <li>⑩ 데이터보호영향평가실시</li> <li>⑪ 고위험 심시스템에 대한 기본권 영향평가 (일부배포자의 의무)</li> </ul>	
공인대리인 (authorized represen- tative)	A시스템 또는 범용 A모델 제공자 로부터 이 규정에 따라 설정된 의무와절치를 대신 이행하고 준수 할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고 이를 수락한 자로서 유럽연합 내에 소재하거나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	② Al리터러시  ① EU 적합성 선언 및 기술 문서 작성, 적합성 평가 수행 사실 확인 ② 관할 당국에 고위험성 AN스템 출시 등 향후 10년 동안 제공자의 세부 정보, EU 적합성 선언 사본, 기술 문서 및 인증기관이 발행한	
수입업자 (importer)	유럽연합에 소재하거나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으로서 제3국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의 이름 또는 상표를 지닌 AL시스템을 출시 하는자	인증서 제공 ③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자가 제공해야하는 정보 제공 ④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고위험성 AN스템의위험성 감소·완화 조치에 대해 관할 당국과협력	※기출시 시스템에 자신의 명의 상표 부착하거나, 수정·변경 출시한 경우 고위험 제공자:
유통업자 (distributer)	공급망에 속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중 제공자 또는 수입업자가 아닌 자로서 유럽연합시장에 AN스템을 제공하는자	- : - ⑤ 해당되는 경우 등록 의무 준수 사실, 등록시 제공된 정보의 적정성 등 확인	간주
제품 제조업자 (product manufac- turer			※고위험 AI시스템이 제조업 명의·상표로 함께 출시되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 고위 제공자로 간주
공급자 (supplier)	고위험성 AI시스템 제공자에게 AI시스템, 도구,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공급자	① 고위험성 AI시스템 제공자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보, 기술접근, 기타 지원 제공 의무	

July 2024 **36 | 37** 

# 최근 입법 트렌드

운영자 (operator)

제공자, 제품 제조업자, 배포자, 공인대리인, 수입업자 또는 유통 언자를의미

- 그리고. EU 인공지능법은 제공자(provider)와 배포자(deployer)를 대상으로 투명성 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공자는 인공지능과 상호작용 중임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AI시스템을 설계 • 개발하여야 하고 사춬묵의 기계적 판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공적으로 생성되었음을 건축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AT<sup>14</sup>시스템 배포자는 시스템 작동을 알리고 개인정보 처리를 하여야 하는 등<sup>15)</sup> 세부적으로 투명성 의무조항을 이행해야 한다.
- 또한 F∐ 이곳지능번에서는 시장에 출시된 모델 방식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고유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하위 시스템이나 응용 프로그램에 통합될 수 있는 이공지는 모델인 범용 AI<sup>16</sup>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으로 범용 AI모델 제공자의 의무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는데, 범용AI 제공자는 학습·시험 절차 및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 기술무서를 작성하고 개정할 의무 FIJ 저작귀법 준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의무 등을 갖는다.
- 한편, EU 인공지능법에 따르면, 범용AI의 고영향 성능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sup>17)</sup>가 있는 범용AI 제공자는 시스템 리스크를 식별하고 외화하기 위하여 모델에 대하 전대적 테스트를 수행하고 무서화 하는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한 표준화된 프로토콜과 도구에 따라 모델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등을 갖게 된다.

### 【 EU 인공지능법상 범용 AI 제공자의 의무】

구분	주요 의무사항
범용 AI 제공자	<ul> <li>※ 학습·시험 절차 및 평가결과 등을 포함한 기술문서 작성 및 개정</li> <li>※ 범용 AI모델을 AI시스템에 통합하고자 하는 AI시스템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문서 작성 및 개정</li> <li>※ EU 저작권법 준수를 위한 정책 마련</li> <li>※ 범용 AI모델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관하여 충분히 상세한 요약서를 작성하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li> </ul>

<sup>14)</sup> 감정인식시스템(emotion recognition system) 또는 생체인식분류시스템(biometric categorisation system)



- ※ 시스템 리스크를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모델에 대한 적대적 테스트를 수행하고 문서화하는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하는 표준화된 프로토콜과 도구에 따라 모델 평가를 수행
- ※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범용 AI 모델의 개발, 시장 출시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럽연합 차워의 시스템 리스크를 평가 및 경감
- ※ 중대한 사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시정 조치를 추적하고, 문서화하고, Al Office에 보고 하며 적절하게 국가 관합 당국에 보고
- ※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범용 AI모델과 해당 모델의 물리적 기반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보장
- ELU 이공지능법을 위반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지되는 이공지능 관련 의무 위반이 경우, 삼청오백만 유로(약 524억원) 또는 저녁도 매출액의 7%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되는 제재를 받게 되다. 또 고위험 인공지능 관련 의무 투명성, 범용AI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칠백오십만 유로(약 112억워)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3%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금액이 부과되다.

# ■ 국내 인공지능 법제 및 정책 동향

## ▶국내 인공지능 법제 동향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범용 AI 제공자

• 국내 인공지능법안<sup>18)</sup>은 21대 국회에서 2020년부터 발의되어 왔다. 2020년 4전(과방위 3건, 산자위 1건), 2021년 4건(과방위 3건, 교육위 1건), 2022년 3건(과방위 1건, 산자위 1건, 교육위 1건), 2023년 2건(과방위)으로 총 13건(과방위가 9건, 산자위 2건, 교육위 2건)의 법안이 발의<sup>19</sup> 되었는데, 이 중 인공지능 자체의 진흥이나 규제 등을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은 총 9건20이고, 2023년에 발의된 2개 법안<sup>21)</sup>에는 교통, 의료, 서비스 등 인공지능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책무와 이용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July 2024 38 39

<sup>15)</sup> 또한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이미지, 음성 또는 영상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시스템 배포자의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 되었음을 공개해야 함.

<sup>16)</sup> 시 모델이 대규모 자체 감독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로 훈련되고, 상당한 일반성을 발휘하며, 모델 출시 방식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개별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 AI 모델(Article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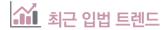
<sup>17)</sup> 범용 A모델의 고영향 성능에 따른 특유한 위험으로서, 그 도달 범위 또는 공중 보건, 안전, 공공안보, 기본권 또는 사회 전반에 대한 실제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정적 영향으로 인하여 유럽연합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가치 시슬에 걸친 규모로 전파될 수 있는 위험 (Article 3-(65)).

<sup>18)</sup> 제명에 인공지능이 명시된 법안으로 한정함.

<sup>19)</sup> 위 법안은 모두 21대 국회 회기 종료(2024. 5. 29.)에 따라 폐기되었음.

<sup>20) 「</sup>한국인공지능 · 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 및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은 대학교 설립과 집적단지 설립을 위한 것이며,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2건 등 총 4건은 인공지능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인공지능 자체의 진흥이나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워 미포함.

<sup>21)</sup>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2. 28.),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안철수 의원 대표 발의, 2023. 8. 8.).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9건 법률안 주요내용】

<b>법률명</b> (대표발의 의원, 발의일)	주요내용	
<b>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b>	인공지능을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2023. 8. 8.)	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대해 차등화된 의무사항을 규정	
<b>인공지능책임법안</b>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설치·운영,	
(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2. 28.)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한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윤두현의원 대표발의, 2022. 12. 7.)	인공지능 관련 산업 진흥에 필요한 조치 규정 사업자에게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b>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b> 관한 법률안 (윤영찬의원대표발의, 2021, 11, 24,)	관한 법률안 요구권, 이의제기권, 거부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 규정)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	
<b>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b>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	
(이용빈의원대표발의, 2021. 7. 19.)	규정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인공지능 관련 윤리기준, 기술 표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수활용 인공지능(특수한 영역*에서	
등에 관한 법률안	활용되는 인공지능) 개발, 제조, 유통 시 신고하도록 함	
(정필모의원대표발의, 2021.7.1)	* 특수한 영역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규정은 없음	
<b>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b>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 규정	
<b>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b> (양향자의원대표발의, '20.10.29.)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필요한 내용 규정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필요한 내용 규정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 윤리적 책임에 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에게 산업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윤리	
(이상민의원대표발의, '20.7.13.)	원칙을 정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만 두고 있음	

• 9건의 법안 소관 상임위(과방위)에서는 2022년까지 발의되었던 7건<sup>22)</sup>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2023. 2. 14.)한 이후,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sup>23)</sup>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나, 비공개로 수정보완 중인 상태에서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되었다.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둔다

<sup>22)</sup>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13.),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1. 7.1.),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1. 7. 19.),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2. 7.).



신뢰성 전문위원회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지원 및 관련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인공지능 신뢰성 전문위원회를 둔다.
국가인공지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둔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회를 위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우선허용·사후규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및 제품 또는 서비스 출시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윤리원칙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위험 인공지능 고지 의무	고위험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자능을 이용해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자해야 한다.

# ▶ 현행 법령상 인공지능 규정 현황

• 현행 법령상 '인공지능'이라는 문언이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50개(2024. 6. 25. 기준)인데, 이중 각 부처의 조직과 직무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직제 성격의 규정을 제외하면 인공지능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23개라고 할 수 있다.

# 【인공지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직제 제외)】

연번	법령명	내용
1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3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4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6조(소재·부품·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등)
7	항로표지법	제2조(정의), 제43조의2(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8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0	바둑진흥법	제12조(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1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약산업육성 · 지원종합계획),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1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July 2024 40 | 41

<sup>23)</sup>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진행(2023. 2. 14.)한 후, 최종 통합·조정된 대안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해당 대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Legislation Newsletter

# 최근 입법 트렌드

1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4(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
1	5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학과 · 정원 등의 증설 · 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 · 상호조정의 기준)
1	6	댐건설 ·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댐관리기본계획)
1	7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1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제8조의2 (계약정원의운영)
1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16(벤처기업집적시설의지정요건등)
2	0.	전자정부법시행령	제15조의2(지능형전자정부서비스의도입및활용)
2	21	특허법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2	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스마트제조혁신촉진지원)
2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대상교육훈련기관)

- 먼저,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행정기본법」에 있다.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적 처분에 관한 입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자동적 처분의 도입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자동적 처분을 도입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였다.
- 그 외 개별법의 경우 정보주체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 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의2),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8) 등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 일정 부분 규제를 하고 있는 일부 법률을 제외하고는 인공지능의 도입・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였다.
- 「디지털의료제품법」(2025. 1. 24. 시행)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센서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디지털의료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요소에 대하여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제40조), 그 평가 결과를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허가 · 인증 · 신고 · 승인 · 평가 등을 할 때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18조의2)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8조) 인공 지능의 적극적인 활용이 촉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는 해당 부처의 업무범위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을 규정하는 등 정부 부처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 · 활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 ▶ 정부 인공지능 정책 동향

- 정부는 2019년 인공지능 강국을 비전으로 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2019. 12. 17.)한 이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면서도,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sup>24</sup>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2020. 12. 24.)하였다.
- 이후 각 부처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에 소비자 및 금융 산업·시장 건전성 보호를 위해 AI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한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수립·발표(2021. 7. 8.)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에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2. 5. 11.)하여 국무총리<sup>25)</sup>와관련 부처 장관<sup>26)</sup>에게 권고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을 발표(2023. 8. 3.)하였다.
- 최근 정부는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2024. 5. 21.)하였는데, 추진계획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고, 그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를 핵심과제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AI와 연관된 핵심과제로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를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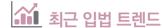
July 2024 42 43

<sup>24)</sup> 정부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위해 4가지 기본방향(①인공지능 특성에 따른 「선제적 법·제도」②글로벌 논의를 고려한 「종합적 법·제도」③민간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법·제도」④사화적합의를 통한 「상생·포용 기반 법·제도」)을 내세운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을 제시.

<sup>25)</sup> 국무총리에게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 하고 통할할 것을 권고.

<sup>26)</sup> 괴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것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

<sup>27)</su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대한민국이 새로운 대지털 질서 정립의 추진계획을 공개합니다). 2024. 5. 21.



# 【정부의 AI 관련 주요 중점 추진계획(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발췌)】

핵심과제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	<ul> <li>'AI 기본법' 제정(고위험 영역 AI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해당 사업자의 안전성 확보조치의무화,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의무 등 포함 예정)</li> <li>고위험 영역에 속하는 AI 사업자의 위험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li> <li>'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AI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조정, 사업자의 이용자보호조치의무 등 포함 예정)</li> <li>'AI 기술로 인한 사고 책임에 관한 연구' 추진 등</li> </ul>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 AI 생성물 표시제 조기 도입, 자체 모니터링 및 조치 등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 강화 지원('24.2.~') - AI 전담 모니터링반, AI 감별반, 분석·삭제반으로 구성된 '딥페이크 선거운동 신속대응체계' 구축('24.1.~') - AI 생성물 표시제(워터마크 등 콘텐츠를 게시할 때 AI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령 제 · 개정('24년~') -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개발('24년)
Al 개발 · 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 Al-저작권 워킹그룹운영(~'24.12월) - Al 저작권 쟁점 분석 및 정책대안, Al 저작권 관련 글로벌 이슈 연구(~'24.12월) - Al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뉴스 등 어문저작물 중심)의 적절한 이용 대가 마련 연구(~'24.12월) - Al 산업 육성과 창작자 보호의 균형적 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명확화 및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추진('24.12월)

## ▶ 22대 국회 인공지능 법제 발의 현황

- 제21대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는 2024년 5월 21일 국회 백브리핑에서 AI법은 22대 국회에서 숙의과정을 거쳐 입법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AI 입법은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세 차례 논의를 거쳐서 2023년 2월에 법안소위를 통과시켰는데 2023년 초에 챗GPT 이슈가 강타했고, 당초 통과시켰던 법안은 챗GPT, 생성형 AI가 있기 이전의 법안들을 정리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진전된 환경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부 보완한 인공지능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위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고, "불완전한 법을 만드는 것은 AI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기업에게도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도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므로, 22대 국회 때 정말로 차분하게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2대 국회가 시작(2024. 5. 30.)되면서 AI 법안 관련해서 재발의에 관심이 끌리고 있다. 2024년 5월 31일 안철수 의원이 「AI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서는 고위험 AI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 사업자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6월 17일에는 정점식 의원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같은 달 19일에는 김성원 의원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야권에서도 AI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AI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AI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6월 19일에 대표 발의했다. 또한 권칠승 의원 주도로 AI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해민 의원도 진흥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규제 강도를 높인 AI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4개 법률안(2024. 6. 20.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2대 국회 발의 4개 법률안 주요내용】

<b>법률명</b> (대표발의 의원, 발의일)	주요내용 <sup>28)</sup>			
<b>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b>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확인 제도, 생성형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2024,5.31.)	인공지능 이용 제품ㆍ서비스 제공자의 사전고지 및 표시 제도 도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4.6.17.)	국가인공지능센터 지정 제도 도입,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사전고지 의무화, 생성형 인공지능 운용 사실 고지 및 표시 의무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의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4.6.19.)	지능의 확인 및 고지 의무,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대한인공지능협회 설립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인공자능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인공자능 실증 규제특례 도입, 고위험영역 인공자능의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2024.6.19.)	고지 의무, 인공자능제품의 비상정지, 민간자율인공자능윤리위원회 설치			

July 2024 44 | 45

<sup>28)</sup> 각 법률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 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규정.